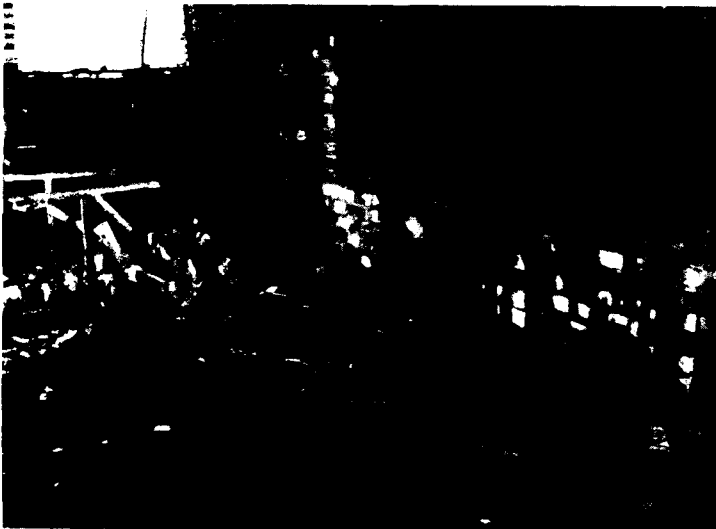


밀실에서 새벽까지 술마시다 참사

석유난로 발로 차 쓰러지면서 발화

- 인명피해: 사망 10명, 부상 2명
- 재산피해: 3백80만원
- 서울 성북구
- 발화: 84.2.3.04 : 21

문제가된 석유난로와 내부 소실상태



이 화재는 평범한 맥주홀에서 일어난 조그만 화재인데도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것은 대중음식점 허가로 밀실까지 설치하여 놓고 접대부를 고용, 변태적으로 영업을 해온 업주와 젊은이들의 무절제하고 방종한 생활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였다.

1. 발화

불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간이무도장에서 춤을 추던 장모군(19세)이 같이 춤을 추고 놀던 이웃 술집 종업원 김모군과 어깨가 부딪혔다고 시비가 벌어져 김군에게 맞게되자 장군의 친구인 이모군(19세)이 찾김에 옆에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걸어서 넘어져 석유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인화되었고 불길에 옆에 있던 소파등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삼시간에 홀 전체로 번졌다.

화재당시 이 맥주홀에는 손님 20여명과 종업원등 30여명이 있었는데 홀 안에 있던 20여명은 불이 나자 재빨리 출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였으나 손님과 여자 종업원 10명은 술에 취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사되어 사망하였다.

2. 건물현황

본 건물은 연면적 836㎡(지하 1층, 지상 3층)인 복합용도의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

81년 5월에 준공되어 다방, 점포, 음식점, 당구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불이난 2층은 원래 한식집이었으나 83. 12. 28 현 주인이 인수하여 업종 및 명의 변경 없이 맥주홀(허가는 대중음식점임)을 경영하여 왔다.

180㎡ 규모의 맥주홀 내부에는 벽돌로 쌓아놓은 6개의 밀실과 1.4m높이의 적벽돌 간막이로 된 여러개의 방이 있었다. 맥주홀 천정은 슬레이트이고 바닥은 아스타일로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방음과 겨울철의 실내 보온을 위하여 모든 창문을 스티로폼과 판지등으로 밀폐시켜 놓았었다.

화재건물의 층별현황

층별	면적(㎡)	용도
지하	215	다방, 이발소
1	204	양복점, 양품점, 서점, 양화점
2	204	맥주홀
3	204	당구장
옥탑	9	계단실, WT

3. 진화

화재당시 이 맥주홀에는 2대의 소화기가 있었고 계단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종업원이 먼저 도망하는 바람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이밖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번 화재와는 무관하였다.

화재는 인근 주민에 의하여 04:25분에 신고되었다.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불길의 창문 밖으로 솟아나오고 있어 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소화작업을 개시하는 한편 출입문과 비상구를 통하여 옥내로 진입, 인명구조 및 진화작업을 실시하여 발화 25분후인 04:46분에 맥주홀 내부를 거의 전소시킨 후 완전 진화되었다. 이 화재에서는 15대의 각종 소방차와 59명의 소방관, 25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

4. 인명피해

이번 화재로 사망한 10명을 분류해 보면 남자4명(20대 2, 30대 2), 여자6명(10대 4, 20대 2)으로 남자는 전부 손님이었고 여사는 맥주홀 종업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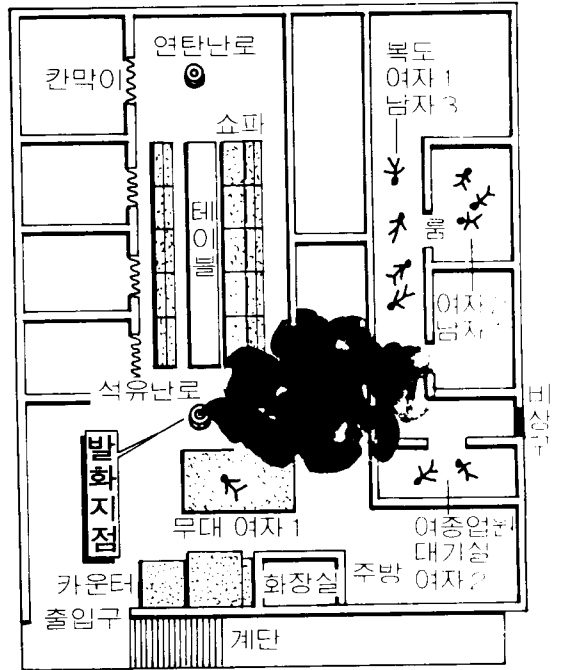
밀실에서 7구(남자 4, 여자 3)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밤새워 춤을 추고 술을 마셔 탈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불이 난 것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 대피하지 못하고, 스치로폼과 의자등이 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탈의실에서 발견된 2명의 여자 종업원은 취침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석유난로가 넘어져 출입구 부근에서 불길이 번졌다고는 하나 출입구까지는 불과 수 미터의 짧은 거리여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대피가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되며 또 출입구 반대방향(밀실부근)에는 비상구가 있어 이를 이용한 탈출도 가능한 상태였다. 이 비상구는 알루미늄 유리창문 구조로서 소방대원은 이 유리창문을 부수고 옥내로 진입, 구조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사망자들은 몽롱한 의식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였거나 취침중에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들이 밀실속의 손님과 동료 종업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만 빠져나가는데 급급하여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5. 문제점

첫째, 대중음식점 허가로 밤 늦게까지 불법영업: 밀실과 간이부도장을 설치해 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 철야영업을 하며 사리판단력이 적은 10대 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화재사고를 유발시켰고 새벽까지 춤추고 술을 마시며



방종한 생활을 즐기던 젊은이들을 모두 화마의 세물로 만들었다.

둘째,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미흡: 화재시 이 맥주홀에는 2대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있어 초기소화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사용법을 모르거나 당황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먼저 도망하기에만 바빠 술에 취한 밀실의 손님과 종업원에 대한 대피유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소형 취약건물에 대한 소방검사 제도: 이 건물은 소방검사를 받아오지 않았는데 이는 3층이하 또는 연면적 1,000㎡ 이하로 81.9.8부터는 자율점검 대상으로, 83.10.24부터는 지도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건물주 스스로 점검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방인력에도 문제는 있었으나 소규모 일지라도 유흥업소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은 어떤 형태로든 소방점검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물은 당 협회의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었으며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인명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이동식 난로에 대한 전도방지조치 미흡: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유흥장소의 출입구 부근에 이동식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도 전도방지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쉽게 난로가 넘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이상 방재연구부 제공